성주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18년 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및 근거 없는 규제 등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군립어린이집의 우선 설치 내용 삭제(안 제12조)
나. 군립어린이집 위탁의 취소 사유 변경(안 제19조)
다. 보조금 반환 사유 삭제(안 제26조)
라. 상위법령 준용 조항 삭제(안 제2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제40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0조의3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규제심사 : 해당 없음〔기획감사실-8304(2018. 10. 19.)〕
라.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주민복지과-58086(2018. 10. 19.)〕
마. 입법예고 : 의견 없음(예고기간 : 2018. 10. 19. ~ 2018. 11. 8.)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영유아보육법」 따라 성주군”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성주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제2항 중 “같은 법”을 “법”으로,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9조 제목 “(위탁의 해지)”를 “(위탁의 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군수는 수탁자가 법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제3항 전단 중 “해지하고자”를 “취소하고자”로, “해지의”를 “취소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해지하고자”를 각각 “취소하고자”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24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보육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보호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통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영유아보육법」 따라 성주군---------- ---------- ---------- ---------- ---------- ---------- -----.
제4조(설치 등)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설치 등)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성주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② ---------- -------- 법 ---------- -- 따른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삭 제>
제12조(설치) ① 군수는 법 제12조의 규정	제12조(설치) ① ----- 법 제12조에 따라

에 의하여 군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농촌지역 등 취약지역과 어린이집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후단 삭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위탁의 해지)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위탁받았을 때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수탁자가 제1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운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제19조(위탁의 취소) ①군수는 수탁자가 법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해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③ ---------- 취소하고자 ------ 취소의 ----------. --------.
④ 수탁자가 제17조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 취소하고자 ---------- 취소하고자 ----------.
제23조(비용의 보조) ① 군수는 모든 어린이집과 보육관련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제23조(비용의 보조) ① ----------

인정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범위----------.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보육아동에 대한 보조) 군수는 보육아동에 대한 입소료 및 보육료등을 국고보조 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24조(보육아동에 대한 보조) ----------범위----------.
제26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4. 법령 기타 이 조례나 관련 규정 및 보조조건을 위반한 경우	<삭 제>
제29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삭 제>